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45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박덕흠 · 윤한홍 · 김장겸
강대식 · 최수진 · 박정훈
조지연 · 고동진 · 서천호
박성민 · 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동물복지축산물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동물복지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제6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동물복지축산물·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3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의3.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0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①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63조의2(동물복지축산물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동물복지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제6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동물복지축산물·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97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5. ~ 10.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01조(과태료) <u><신 설></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8.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1.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의3.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9. (현행과 같음) ③ -----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u>산물 표시를 한 자</u> 12. ~ 18. (생 략) ③ ~ ⑤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